제976회 신설·강화규제 예비심사 결과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개정안 (국토교통부)	1.건설공사 동영상 촬영 및 관리(강화) ㅇ (지침 제63조제6항)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촬영대상* 구체화 및 시공 과정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 촬영 의무화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의 주요 구조부 ㅇ (지침 제93조제11항)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촬영대상 구체화 및 시공 과정 확인자료에 대하여 사진과 동영상 촬영 의무화 ㅇ (지침 제133조제2항) 주요 구조부 외 구조 안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시설물에 대하여 동영상 촬영 근거 신설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63조, 제93조, 제133조	1.비중요
2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1.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신설) ㅇ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 – ①공매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할 사항, ②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대상 법인의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제출, ③증권사의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자체확인 및 보고 ▶금융투자업규정 제6-37	
3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안 (금융감독원)	1.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신설) ○ 세칙 개정안 제4-6조 제5항은 수탁 증권사가 실시한 점검내역 등에 대한 보관의무 등을 규정 - 수탁 증권사의 확인의무 위반이 제재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바 향후 위반여부 판단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함 ※ 세칙 제4-6조(투자중개업자의 확인)의 구성 : (제1항) 점검항목, (제2항 및 제3항) 점검방법, (제4항) 확인결과보고, (제5항) 점검내역 등 보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제4-6	1.비중요
4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개정안 (해양경찰청)	1.진도대교 통과 선박의 수면상 최고높이 신고 의무 및 해상풍력단지 진입시 관제통신 의무(신설) ○ 선박의 수면상높이가 진도대교와 충돌할 우려가 있는 선박의 선장은 해당 수역을 통과하는 경우 자선의 수면상 최고높이를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도록 함 * (기존) 전국 15개 교량 및 4개 송전선 수역 통과시 신고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 (개정) 전국 16개 교량 및 4개 송전선 수역 통과시 신고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7조	
5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	1.특정국가 상황허가 대상품목 추가(강화) ㅇ 미국 금융제재품목 29개(윤활유첨가제, 반도체장비, 공작기계 등)를 대러시아 수출통제 품목에 반영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4조 2.개별수출허가의 면제 미적용(강화) ㅇ 현행 고시는 무기 전용 가능성이 높아 우려거래자로 지정된 자에 대해서도 허가면제를 제한없이 허용 중인 바, 허가면제를 제한하도록 개선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6조	1.비중요 2.비중요
6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 (해양수산부)	1.수상낚시터 유어장의 지정 기준 등 신설(신설) ㅇ 마을어장에서 수상시설물을 이용하여 유어장(수상낚시터)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 등 신청 절차를 추가(안 제2조) – 「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어장에 수상시설물을 이용하여 수상낚시터를 설치하는 경우 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 산정 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 수상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기준 마련(안 제3조) - 수상낚시터의 시설 면적은 유어장 면적의 100분의 6 미만으로 하고, 시설기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 2 및 「낚시터의 시설 및 장비 세부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 ○ 유어장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정비(안 제5조의2, 제7조, 제9조, 제10조의2, 제13조) - 수상낚시터를 원활하게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유어장 출입, 낚시터 이용객 준수 사항 등에 수상낚시터를 추가함.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5조의2, 제7조, 제9조, 제10조의2, 제13조	
7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국토교통부)	1.전기자동차의 주행가능거리(신설) ○ 시가지주행, 고속도로주행 모드에서 전기자동차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허용오차 기준을 각 -5% 이내로 명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8조의3	1.비중요
8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무수아황산의 성분규격 신설(강화) ○ 무수아황산에 대한 성분규격 신설, 무수아황산 제조 원료(유황)에 대한 규격 설정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제II의4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9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환경부)	1.이륜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신설) ㅇ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작된 운행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허용기준 마련(안 별표 21 제2호가목) – CO : 1.5% 이하 * (참고) HC : 현행 유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8조	1.비중요
10	학교건강검사규칙 개정안 (교육부)	1.신체능력검사의 대상 확대(강화) ㅇ 현행 신체능력검사는 초등학교 4학년을 선택적으로 실시하고,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이를 초등학교 3학년은 선택,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의무적으로 실시하고자 함. ▶학교보건법 제7조▶학교건강검사규칙 제7조	1.비중요
11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안 (외교부)	1.여권 로마자성명 표기·변경 관련 서류 제출 – 여권 로마자성명 표기·변경 관련 제출서류 명시(신설) ㅇ 여권 로마자성명 정정·변경 신청 시 제출 필요서류 명문화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	1.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1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식품의약품안전처)	1.수입식품등 유통이력추적관리 의무 등록 시기 단축(강화) ㅇ 수입식품등 유통이력추적관리 의무등록 시기 규정(수입 건강기능식품의 품목류별 2016년 이후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영업자: 해당 연매출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 해 12월 1일로 단축하고자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3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5조	1.비중요
13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개정안 (보건복지부)	1.약제 제조업자 등의 약제 상한금액 조정신청 의무(신설) ㅇ 약제의 제조업자 등이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한 약제의 평가기준(별표 1의2) 적용과 관련, 평가 기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약제 제조업자 등은 이미 고시된 약제의 상한금액 조정 신청을 의무하는 내용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제3조	1.비중요
14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정안 (국가유산청)	1.영향진단의 실시 시기(신설) ㅇ 일정규모 이상 또는 매장유산 유존지역에서 행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사업계획 수립 완료 전에 영향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구체적인 시기는 별표 1과 같음	1.비중요 2.비중요 3.비중요 4.비중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 영향진단은 매장유산 보호를 위한 '지표조사', '유존지역 평가'와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한 '영향검토'로 이루어지는 만큼, 건설공사 시행자가 사업계획의 미확정 등으로 동시에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각 방법을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음 ○ 영향진단 시기를 기존의 지표조사 실시 시기(시행일에 맞춰 삭제 예정)를 이관하여 그대로 제정함으로써, 기존에 건설공사 인허가 전으로 시기를 규정하고 있던 유존지역 평가와 영향검토의 시기가 시행규칙(안) 별표 1의 기조 지표조사 실시 시기로 통합되었음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9조▶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3조 2.진단보고서 작성 및 제출 방법과 적정성 검토(신설) ○ 국가유산 영향진단 보고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및 첨부서류, 진단보고서의 제출시기 및 적정성 검토 항목 등을 규정함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11조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3.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및 신청(신설) ○ 국가유산영향진단 전문인력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no.	법령명	규제내용	결과
		기관의 교육인력 규모 및 시설 요건을 제한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24조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4.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등 (신설) ㅇ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제24조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규칙 제18조	